

충청북도 공무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영학

# 충청북도 공무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최경천 의원 등 12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년 11월 29일
-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9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  
·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관  
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  
질적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충북도 대상 공무원: 360명(행정보조 113, 단순노무원 59, 청소  
· 조경·도로보수 188)

4.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 2조)
- 적용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 4조)

- 정원관리, 직종의 분류, 보수의 결정, 사회보험의 가입,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10조)
- 정년, 해고 등의 제한, 전보, 휴직, 후생복지,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교육훈련, 산업안전,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제23조).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정의)에서는 공무원(公務職)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제3조에서는 이 조례는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청원경찰, 단시간 근로자 등 적용 제외대상 근로자를 규정하였음.
  - 제8조에서는 공무원의 보수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과 도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임금협약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였음.

-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정년, 해고 등의 제한, 전보, 휴직, 후생복지,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을 규정하였으며
  - 제23조는 공무원의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무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권고적인 내용이므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에서는 권고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향후 노사교섭에 의해서 규정을 마련할 경우에는 실효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조례의 자구를 검토한 결과 공무원의 고용안정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공무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에서 충청북도 공무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각 조항에 있는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1부.